



## 구의회사무국



수신자 강북구청장(행정지원과장)

(경유)

제 목 구청장 의견표명 요청

1. 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(의안의 발의)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송부하오니,
2.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51조제2항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안건현황

연번	발의의원	안건명	비고
1	김명숙, 이정식 유안애, 한동진 구본승, 김영준 장동우	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	유안애, 이정식 김명숙, 장동우 김영준, 한동진 구본승	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3	이용균, 이백균	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	

붙임 조례안 1부. 끝.

## 구의회사무국장

주무관 **이동민** 의사팀장 **노희범** 구의회사무국장 <sup>06/03</sup>**정명수**

협조자 전문위원 **代강한철** 전문위원 **代강한철**

시행 구의회사무국-4699 ( ) 접수 ( )

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) / <http://council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4521 / 전송 02-901-4519 / 대시민공개